

“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”

이 자료는 **즉시**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	2018년 3월 14일(수) (총 7쪽)	담당부서	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
		담당자	김제란 팀장 (043-880-5841) 김현준 대리 (043-880-5842)

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

- 주의·환기 표시 폐지 검토해야 -

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의·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.

※ **(주의·환기 표시)**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이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(작업자, 기구, 제조라인,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)에서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

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(원재료란에 표시)	주의·환기 표시(별도 표시)
B1염산염, 비타민B2, 엽산, D-소비톨액(소비톨0.7%), 유당, 글리니틴, 계곡분말, 땅콩, 우유, 대두, 밀 함유 , 특성성분: 포장재질: 폴리프로필렌, 유통기한: 측면표기일기	이제품은 쇠고기, 닭고기, 토마토, 계, 새우,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십시오. 부정·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
□ 주의·환기 표시빈도 높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망라해 표시제도 취지 못살려

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*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, 주의·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(75.8%)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시중 유통 중인 초콜릿류·우유류·과자류(유탄처리제품)·어린이음료 각 30종 총 120개 제품

특히,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(26.7%)에 불과했으나, 28개(93.3%) 제품은 별도의 주의·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. 복숭아·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·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.

[어린이음료(30개 제품) 주의·환기 표시 현황]

표시성분	복숭아	토마토	대두	우유	메밀	밀	땅콩	기타*	계**
표시제품 수(개)	26	26	23	22	19	19	14	65	214
표시빈도(%)	86.7	86.7	76.7	73.3	63.3	63.3	46.7	-	

* 난류(10건), 아황산류(8건), 호두(8건) 등

** 중복집계

□ 주의·환기 표시, 소비자 혼란 초래할 수 있어 폐지 검토 필요

유럽연합(EU)·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·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*,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·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.

* 사업자 자율 표시

반면,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·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, 주의·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*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.

* '위해식품 회수지침'에 따라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수대상에 해당

또한,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·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·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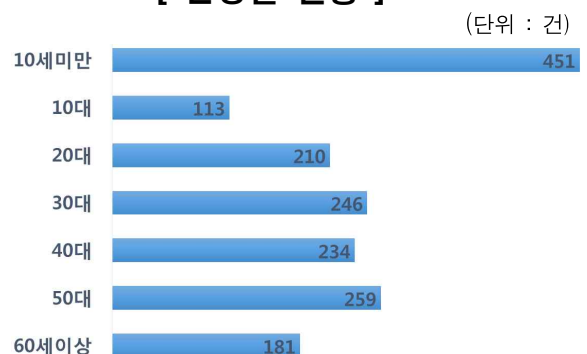
□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고, 2년새 약 2배 증가, 영유아·어린이가 상당수 차지

최근 3년간(2015년~2017년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,853건으로, 특히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되어 2015년(419건)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.

* 연도별 위해사고 건수(증감률) : '15년 419건 → '16년 599건(43.0%↑) → '17년 835건(39.4%↑)

특히, 4건 중 1건은 '10세 미만' 영유아·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돼(451건, 26.6%)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 따라서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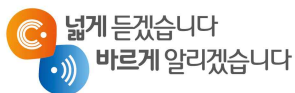
[연령별 현황]



* 연령 확인이 가능한 1,694건 분석

(예시) "알레르기 유발물질"만 표시	(예시) "알레르기 정보" 명시
<p>백설당, 식물성유지1(말레이시아산), 식물성유지2 (원료: 유채, 전분(바닐라추출물, 합성착향료, 바닐린), 밀, 우유, 대두, 쇠고기 함유) 내용: 36g · 포장재질: 폴리프로필렌 · 유통기한: 측면표기일까지</p>	<p>5% · 알레르기 정보: 우유, 밀, 보리, 대두 함유</p>

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▲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. 또한,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▲주의·환기 표시 폐지 ▲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.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kca.go.kr



< 붙임 >

1 일반 현황

□ 정의

-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항원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임.

□ 관련 규정

가.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

- ‘식품등의 표시기준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-149호)’에 따라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함.
 - (표시대상)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류(가금류에 한함), 우유, 메밀, 땅콩 등 총 21개 품목임.

[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]

구분	도입 당시(11개 품목)	현재(21개 품목)*
표시대상	난류(가금류), 우유, 메밀, 땅콩, 대두, 밀, 고등어, 게, 돼지고기, 복숭아, 토마토	난류(가금류), 우유, 메밀, 땅콩, 대두, 밀, 고등어, 게, 새우, 돼지고기, 복숭아, 토마토, 아황산류(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SO ₂ 로 10mg/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), 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류(굴, 전복, 홍합 포함)

* '18. 2. 1. 기준 표시대상 품목임.

- (표시방법)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 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함.
- 가공식품 이외에도 학교급식,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식품접객업소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(학교급식)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급식 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학생에게 알리고 식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.
 - (어린이기호식품)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(제과·제빵류, 아이스크림류, 햄버거, 피자)을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함.

나. 주의·환기 표시

- 「식품위생법」에 근거한 ‘식품등의 표시기준’에 따른 “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” 로써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(작업자, 기구, 제조라인,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)에서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함.

주의·환기 표시
(예시) “ <u>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</u> ” 등의 표시

2 표시실태 조사 결과

표시실태 조사 개요

- (조사대상) 시중 유통 중인 초콜릿류·우유류·과자류(유탕처리제품)·어린이음료 각 30종 총 120개 제품
- (선정기준) 알레르기에 취약한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
- (구입방법) 분류기준에 따라 랜덤 샘플링(random sampling) 구입
- (조사항목)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 및 주의·환기 표시빈도 등

□ 원재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비율 높은 편

-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중 98개 제품(81.7%)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확인되어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는 제품 구입 시 원재료 표시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특히, 초콜릿류·우유류·과자류는 조사대상 90개 전 제품(100.0%)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원재료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.
 - 반면, 어린이음료는 조사대상 30개 중 8개 제품(26.7%)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음.
- 알레르기 유발물질별로는 ‘우유’가 90개 제품(75.0%)에 포함되어 가장 빈번하게 표시되었고, ‘대두’(64개, 53.3%), ‘밀’(48개, 40.0%) 등의 순으로 표시빈도가 높았음.

□ **주의·환기 표시빈도 높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망라해 표시제도 취지 못살려**

-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, 91개(75.8%) 제품이 주의·환기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남.
- 특히,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(26.7%)에 불과했으나, 28개(93.3%) 제품은 별도의 주의·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음.
- 복숭아·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·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음.

[어린이음료(30개 제품) 주의·환기 표시 현황]

표시성분	복숭아	토마토	대두	우유	메밀	밀	땅콩	기타*	계**
표시제품 수(개)	26	26	23	22	19	19	14	65	214
표시빈도(%)	86.7	86.7	76.7	73.3	63.3	63.3	46.7	-	

* 난류(10건), 아황산류(8건), 호두(8건) 등

** 중복집계

□ **주의·환기 표시, 소비자 혼란 초래할 수 있어 폐지 검토 필요**

- 유럽연합(EU)·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·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,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·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.
- 반면, 우리나라는 ‘소비자 주의사항 표시’로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·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, 주의·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음.
- 또한,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·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고,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·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.

3

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 분석

위해사례 분석 개요

- (조사개요) 최근 3년간(2015년~2017년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*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 총 1,853건 분석

*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(CISS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

□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고, 2년새 약 2배 증가, 영유아어린이가 상당수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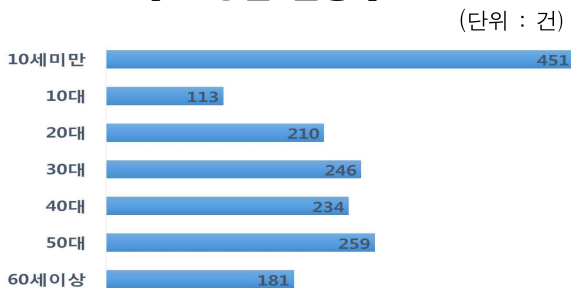
- 최근 3년간(2015년~2017년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,853건으로, 특히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되어 2015년(419건)에 비해 약 2배 증가함.

[연도별 위해사례 접수현황]

구분	2015년	2016년	2017년
건수(증감률)	419건	599건(43.0%↑)	835건(39.4%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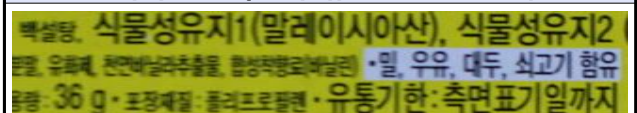
- 특히, 4건 중 1건은 ‘10세 미만’ 영유아·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돼 (451건, 26.6%)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- 따라서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방법 개선도 필요함.

[연령별 현황]



* 연령 확인이 가능한 1,694건 분석

(예시) “알레르기 유발물질”만 표시



(예시) “알레르기 정보” 명시



□ 주요 위해사례

- [사례1] 2015. 12.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이유식을 구입하여 자녀에게 먹였는데,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음.
- [사례2] 2016. 8. B 어린이(10세 미만)는 우유 성분이 포함된 웨하스 두 조각을 먹은 후 입 주변에 발진이 생겼고, 점차 얼굴과 눈으로 발진이 퍼져 병원 치료를 받음.
- [사례3] 2017. 4. C 어린이(10세 미만)는 초콜릿을 먹은 후 목·귀 등에 간지럼증과 발열 증상이 발생하였고, 이후 발까지 확산되어 병원 치료를 받음.